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구합2312

재/판/요/지

근로자가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함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유류비나 차량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근로특성상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을 더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피고가 2006.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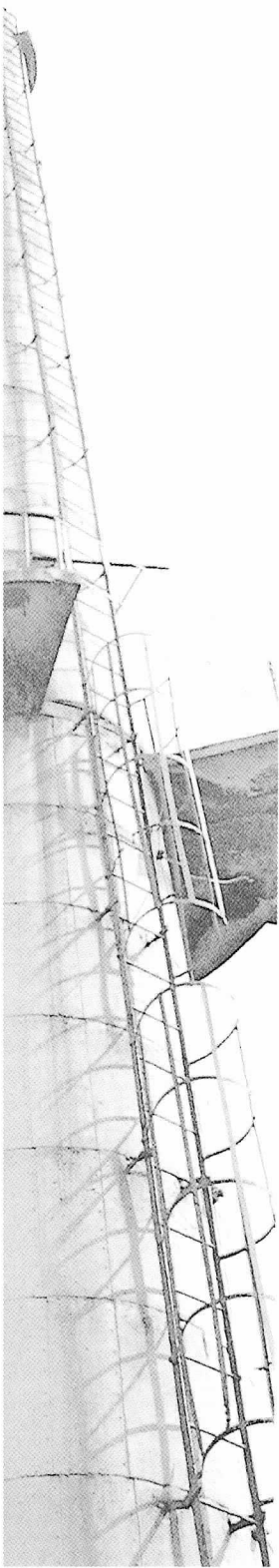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O. OO. 02:10경 퇴근하던 중 울산 울주군소재 배수펌프장 앞에서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전신주와 충돌하여 '좌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총비골 신경마비, 좌슬관절 불안정성(후방십자인대파열)' 으로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O. OO.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한 위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또 사업주가 위 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B사는 버스 등 대중교통이 20:40경에 끊기는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새벽에 퇴근하는 원고로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B사의 식당근무의 현장책임자인 윤○○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상



황을 인정하고, 다른 주간근무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A사간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근무시간이 21:00경부터 익일 06:00까지로 되어 있으나, B사의 식당에서 06:00경에 제공하는 아침을 먹는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입사 후 위사고 발생일 까지 혼자 야간 근로자들에게 자정 무렵에 제공하는 야식을 위하여 통상 21:00경에 출근하여 자정 무렵부터 00:30경까지 야식을 제공한 후 설거지 등의 업무를 마치고 02:30경에 퇴근하여 왔고, 다만, 그날 제공되는 야식의 종류에 따라 출근이나 퇴근시간이 30여분씩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의 사용자인 A사 소속으로 B사의 식당운영의 책임자인 윤OO는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2) B사의 야간근무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원고가 출·퇴근하는 시간대에는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가 없었고, 노선버스가 20:40경에는 끊겨 이를 이용하기도 사실상 곤란하였다. 이에 원고는 앞서 본 최OO명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위 윤OO는 원고의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별도 차량지원에 대신하여 위 자동차를 통근차량으로 이용함을 승인하였다.

(3) 그런데 B사는 원고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 유류비를 지원하거나 차량유지관리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원고의 출·퇴근을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평소에는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집에서 B사까지 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데, 가끔은 친구 집인 울산 울주군소재 동아파트에서 출근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1)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출·퇴근 시간, 출·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그 근무의 형태나 심야근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사 후부터 약 2년 동안 실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시간(21:00경부터 02:30경 또는 03:00경까지)을 근무하는 것을 회사로부터 승인받고도 주간근무자와 같은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당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그 급여 중에 일정 금액의 통근비용 보전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근무지인 울주군 두서농공단지 내의 B사는 외진 곳에 있어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출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원고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 친구의 집인 울산 울주군 소재 동아아파트에서 출근하기도 하였으나, 위 동아아파트는 원고의 집보다 B사에 출근하는 거리가 훨씬 가까운 곳이며, B사의 식당업무의 책임자인 윤○○는 원고가 승용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알고 원고의 입사 당시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출·퇴근과정,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그 형태, 근무시간에 비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B사의 식당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로 출·퇴근한 것은 그 과정이 사업주인 A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